



EUDR의 최근 동향과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
2025. 8. 11.(월) 14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01 EUDR의 개요

02 EUDR의 최근 주요 동향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04 맺음말

01

EUDR의 개요

01 EUDR의 개요

1. 공식 명칭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와 관련된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유럽연합 시장 출시 및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출 및 EUTR 규정 폐지에 관한 규정((EU) 2023/1115)(2023년 5월 31일)

2. 목적

EU 시장에 수입·판매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무관하고, 생산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증명을 의무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

3. 적용 대상

(1) 규제 품목 및 제품

- 관련 품목(relevant commodities) : 소, 카카오, 커피, 기름야자, 고무, 콩, 목재
- 파생 제품(relevant products) : 위의 7가지 품목을 포함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들로서 EUDR 부속서 I에 열거된 제품(쇠고기, 소가죽, 초콜릿, 팜유, 타이어, 목재 가구, 종이제품 등)

01 EUDR의 개요

(2) 적용 대상 기업

- 운영자/사업자(Operator) : 대상 제품을 EU 역내에 수입, 시장 출시 또는 수출하는 자연인과 법인
- * 제3국에서 대상제품 수입하는 경우, 수입 제품이 세관 절차상 ‘자유 유통을 위한 반출’에 따라 신고될 때, 세관신고서 관련 데이터에 수입자 역할로 표시된 기업이 운영자
- 거래자/유통업자(Trader) : 제품 출시 이후 대상 제품을 EU 역내 시장에 유통하는 공급망에 속한 자연인과 법인(운영자로부터 제품을 구매,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등)

※ 기업 규모별 구분

구분		대차대조표 총액	순 매출액	평균 직원수
대기업(Large, Non-SMEs)		2500만 유로 초과	5000만 유로 초과	250명 초과
중소기업(SMEs)	중기업(Medium)	2500만 유로 이하	5000만 유로 이하	250명 이하
	소기업(Micro and Small)	500만 유로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50명 이하

01 EUDR의 개요

4. 주요 내용

(1) EU 시장에 출시, 수출하기 위한 요건

- 규제 품목을 EU 시장에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자(운영자)와 시장에 공급하는 거래자는 당해 제품의 생산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의무
- 실사 수행 결과 i)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과 무관하고, ii) 생산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으며, iii)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실사 및 실사 보고서로 입증한 경우에만 EU 역내에서 해당 상품 및 제품의 유통이 가능

산림전용 무관 (deforestation-free)	관련 제품이 생산된 토지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전용(인위적으로 유발되었는지 여부 관계 없이 산림이 농업적 용도로 전환)이 없을 것 ※ 목재 관련 제품은 해당 목재가 벌채된 산림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황폐화(산림 피복의 구조적 변화로서, 원시림 또는 천연갱신림이 산업조림지 또는 기타 임야로 전환되거나, 원시림이 인공림으로 전환된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
합법적 생산 (legally producing)	생산구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 지역법, 국제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생산해야 한다는 것 운영자는 생산국가의 법적 상황에 관해 그 국가의 법규 현황 인식, 적용법규 준수를 나타내는 서류 등 정보 수집, 전체 공급망에서 추적 가능성 및 적합성 확보를 위한 총체적 평가 필요

01 EUDR의 개요

(2) 실사 의무 부과

- 운영자(기업 규모 무관)와 거래자(대기업에 한정)는 대상 제품을 EU 역내에 시장 출시(또는 수출)하기 전에 실사 수행하고 실사 보고서 제출(→ 일정한 경우 규제 간소화 조치 시행)
- 실사는 관련 정보 수집, 위험 평가, 위험 완화 조치로 구성

실사 단계	내 용
정보 수집	<p>제품명 등 제품 정보, 수량, 생산국, 지리정보*, 대상 제품 취급 기업 명칭, 주소, 산림전용 무관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합법성 검증 정보 등 수집</p> <p>* 지리정보 : 대상 제품이 생산된 모든 토지 구획의 지리정보로서, 토지 구획이 4ha 이상인 경우 폴리곤(다각형)으로, 4ha 미만인 경우 점으로 위. 경도 정보 제공, 수기 입력 또는 GeoJason 파일 업로드</p> <p>시장출시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5년간 해당 정보 보관, 관계당국 요청시 제출</p>
위험 평가	<p>수집 정보에 기반하여 대상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나 원자재가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평가</p> <p>➡ 평가 결과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함</p> <p>* 평가 기준 : 생산국 위험 분류, 생산국 산림 존재, 원주민 존재, 산림감소, 산림황폐화 상황, 정보 출처, 관련 공급망 복잡성 등 고려</p> <p>최소 연 1회 위험 평가 문서화 및 검토, 관계 당국 요청시 제출</p>
위험 완화 조치	<p>평가 결과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판단되면 일정한 조치 시행하여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p> <p>* 위험 완화 조치 : 생산자나 수출업자에게 추가 정보 요구, 제3자에 의한 조사·감사 실시 등</p> <p>위험을 완화하고 효과적 관리 목적으로 실사 체계 구축하고 최소 연 1회 체계 검토 및 업데이트</p>

01 EUDR의 개요

(3) 실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규제 품목을 최초로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기업규모 무관)은 실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로 작성, 시장 출시 이전(통관 절차 이전)까지 EU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제출
-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대기업(ex. EU에 수입된 종이를 가공하여 신문 제작 및 배포)은 이미 실사가 수행된 기존 제품의 실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새로운 실사 보고서 제출, 단 그러한 기존 제품에 대해 모두 실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의무
cf. 중소기업인 운영자의 경우 기존 제품과 관련된 실사 보고서 참조 번호만 확인하면 되고, 실사 보고서를 따로 제출할 의무는 없음(cf. 중소기업인 거래자는 실사 의무 없음)
- 만일 EU에 이미 출시된 대상 품목을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실사 및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 발생

01 EUDR의 개요

(3) 실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 또는 수출한 공급망의 하위 운영자와 거래자에 대한 실사 수행되었고, 산림전용 위험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발견되었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 부속서 II에 규정

부속서 II

제4조(2)에 따라 실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1. 운영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관련 상품 및 관련 제품이 시장에 진입 또는 철수하는 경우 경제 운영자 등록 및 식별(EORI) 번호
2. 제품의 HS 코드, 텍스트 설명(상호 포함), 해당되는 경우 전체 학명, 그리고 운영자가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려는 관련 제품의 수량(순중량(kg)으로 표시)
3. 제품이 생산된 국가 및 모든 토지 구획의 지리적 위치(소를 포함하거나 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관련 제품 및 관련 제품을 사료로 사용한 경우, 지리적 위치는 소가 사육된 모든 시설을 지칭함, 관련 제품이 여러 구획의 토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포함하거나 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경우, 제 9조(1)(d)항에 따라 모든 토지 구획의 지리적 위치가 포함)
4. 기존의 실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운영자의 경우 해당 실사 보고서의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
5. 텍스트: '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운영자는 규정 (EU) 2023/1115에 따라 실사가 수행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해당 규정의 제3조 (a) 또는 (b)항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만 발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6. 서명 : 날짜, 이름 및 직위 포함

01 EUDR의 개요

(3) 실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사보고서의 구성 : ①DD 참조번호, ②활동 구분(수입/수출/EU역내), ③운영자/거래자의 명칭, 주소, ④수입/수출이 이루어진 국가, ⑤추가 정보(생략가능), ⑥산물 또는 제품 정보 : CN 코드, 상세 설명, 순중량, 학명/보통명칭, 생산국, 생산 토지구획 면적(ha), 지리정보 제공방법

The screenshot displays the 'New Statement' form in the EUDR reporting system.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with key fields highlighted by red boxes:

- 2. Activity:** Includes radio buttons for 'Import', 'Export', and 'Domestic'.
- 3. Operator/Trader name and address:** Shows 'Belgium Exports Limited' as the operator name and 'Belgium' as the country.
- 6. Commodity(ies) or Product(s):** A table listing commodities with columns for 'Commodity(ies) or Product(s) Description', 'Net Mass (Kg)', 'Volume (m3)', 'Supplementary Units', and 'Total Area (ha)'. One entry is highlighted: 'Soya Market Test' with a net mass of 20000 Kg.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are buttons for 'Close', 'Created by (0) on', and 'Save'.

01

EUDR의 개요

(4) 국가별 위험등급 분류

- 산림전용 또는 산림황폐화와 관계 있는 제품을 생산할 위험을 국가별로 평가하여 저위험, 고위험, 표준위험 국가로 분류하여 발표(2025. 5. 22)
- 위험 정도에 따라 실사의무 차등화(제13조) : 저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실사의무 간소화(정보수집 의무만 있고, 위험 평가나 위험 완화 조치 의무 면제)
- 관계 당국의 검사율 및 검사량 차등(제16조) : 관계 당국이 EUDR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 자국 내 시장 출시 또는 수출하는 운영자 검사율이 관련 제품 생산국의 위험 분류에 따라 차등, 고위험 국가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관련 제품의 검사량 최저 9%로 규정

01 EUDR의 개요

5. 시행일

- EUDR 자체는 2023. 6. 29.부터 시행
- 2024. 12. 적용일 1년씩 유예하기로 규정 개정함에 따라 대. 중기업은 2025. 12. 30, 소규모 및 영세기업(Micro and Small)은 2026. 6. 30일부터 적용
- EUDR의 적용을 받는 관련 제품에 대하여 생산 일자와 EU 시장 출시일자에 따른 EUDR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 ↓ ↓ ↓
(목재 제품의 경우 EUTR과의 조정을 위해 기존에 EUTR을 준수해서 생산된 일부 제품은 3년의 전환 기간 인정)

관련 제품	대상 품목 생산 일자	대상 품목이나 관련 제품의 EU 시장 출시일자		
		2025. 12. 30. (영세 및 소기업은 2026. 6. 30) 이전	2025. 12. 30. (영세 및 소기업은 2026. 6. 30) 이후 2028. 12. 30. 이전	2028. 12. 31. 이후
EUDR 부속서 I에 규정된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콩 제품	2023. 6. 29 이전	EUDR 미적용		
	2023. 6. 29 이후	EUDR 미적용	EUDR 적용	
EUDR 부속서 I에 규정되고, EUTR 부속서에 규정되지 않은 목재 제품	2023. 6. 29 이전	EUDR 미적용		
	2023. 6. 29 이후	EUDR 미적용	EUDR 적용	
EUTR 부속서에 규정된 목재 및 목재 제품	2023. 6. 29 이전	EUTR 적용		EUDR 적용
	2023. 6. 29 이후	EUTR 적용	EUDR 적용	

02

EUDR의 최근 주요 동향

02 EUDR의 최근 주요 동향

1. 규제 간소화 조치

(1) 기업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나 원자재를 역내에서 유통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하위 공급망에 위치한 대기업 운영자와 거래자는 기존 실사 보고서 참조하여 실사 보고서 제출 가능
- 중소기업 운영자와 거래자는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취급하는 제품의 실사 보고서 참조 번호 및 관련 정보 보관 의무
- 동일한 지리적 위치로부터의 동일한 수량의 제품이 수회의 선적이나 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의 기한 내에 총 1회의 실사 보고서 제출로 가능

(2) 공인 대리인의 역할 명확화

- 운영자와 거래자로부터 실사보고서 정보시스템 제출 업무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공인 대리인은 EU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일 것, 실사 보고서 제출만 위임받아 대리 수행하는 것일 뿐, 실사 수행 자체의 책임은 운영자와 거래자에게 있음
- 1명의 공인 대리인이 다수 기업의 실사 보고서 제출 대리 가능

02 EUDR의 최근 주요 동향

1. 규제 간소화 조치

(3)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 명확화

- 1) 목적 : EUDR의 적용을 받는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범위를 명확화
- 2) 주요 내용 : 위임법(Delegated Regulation)을 통해 부속서 I 개정 제안

※ 부속서 I에 기재된 목재제품(2025. 4. 15. 부속서 개정안 반영)

◎ 관련 제품에서 제외되는 것(공통사항) : a) 제품의 샘플(동일한 유형이나 품질 제품에 대해 주문 요청하는 목적 외의 소비나 사용 배제), b) 테스트용 제품(분석이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그 분석이나 검사 후 완전히 폐기되는 것)

◎ 목재(Wood) 품목에 대나무(Bamboo), 등나무(Rattan) 및 나무 속성을 가진 것은 불포함, 이것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EUDR 적용 제외

관련 품목	HS 코드	관련 제품 설명
목재 (Wood)	ex 4401	땃나무, 칩, 톱밥, 등나무, 팻릿 등 응집 여부 관계없음(2008/98/EC 제3조에 명시된 폐기를 불포함)
	ex 4402	숯(셀이나 너트 탄 포함)으로서 응집 여부 관계없음
	ex 4403	원목
	ex 4404	조각 말뚝, 말뚝류
	ex 4405	목모와 목분
	ex 4406	철도용, 궤도용 받침목
	ex 4407	제재목
	ex 4408	단판
	ex 4409	성형목재
	ex 4410	파티클보드
	ex 4411	섬유판
	ex 4412	합판, 베니어 패널
	ex 4413	고밀도 목재
	ex 4414	그림, 사진등의프레임(중고제품불포함)
	ex 4415	목재로 만든 포장케이스, 상자 등(중고제품, 출시된 제품을 지지, 보호, 운반 목적의 포장재나 포장 컨테이너(일회용, 다회용) 불포함)
	ex 4416	나무로 만든 통·배럴(중고제품, 출시된 제품을 지지, 보호, 운반 목적의 포장재나 포장 컨테이너(일회용, 다회용) 불포함)
	ex 4417	목재로 만든 공구, 공구의 손잡이 등(중고제품 불포함)
	ex 4418	목재가구 등(중고제품 불포함)
	ex 4419	나무로 된 테이블웨어, 키친웨어(중고제품 불포함)
	ex 4420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중고제품 불포함)
	ex 4421	그 밖의 목제품(옷걸이, 관 등)(중고제품 불포함)
	ex 47**	목재펄프(중고제품, 폐기물 재생 제품과 그 파생제품 불포함)
	ex 48**	종이와 판지(2008/98/EC 제3조에 명시된 폐기물, 중고제품, 폐기물 재생 제품과 그 파생제품, 출시된 제품을 지지, 보호, 운반 목적의 포장재나 포장 컨테이너(일회용, 다회용), 제품에 동봉된 부속품 불포함) (소관)481490-1010, 481490-1090
	ex 49**	인쇄된 책, 스토, 그림과 다른 인쇄된 제품(중고제품, 제품에 동봉되는 부속품 불포함)
	ex 9401**	좌석(코드 9402 및 중고제품 불포함)
ex 9403.30, 9403.40, 9403.50, 9403.60 9403.91**	목재가구(중고제품 불포함)	
ex 9406.10**	조립식 목재 건물(중고제품 불포함)	

02 EUDR의 최근 주요 동향

2.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1) 위험등급 평가

① 목적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저위험 국가에서 조달할 때 간소화된 실사의무 부과하는 인센티브 제공, 생산국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성 향상 및 산림전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② 내용

모든 국가의 산림전용 발생 가능성(위험)을 평가하여 저위험, 표준위험,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 해당 국가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의 실사 의무와 관할 당국의 제품 점검 비율 차등화 → 저위험 국가에서 제품 수입하는 경우 실사 의무 완화 (위험평가나 위험완화 조치 의무 면제), 고위험 국가에서 제품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실사 의무 부과, 전체 제품 중량 및 관련 기업의 9% 검사 실시

③ 평가 방법

정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 원칙, 정성적 기준도 고려 가능 

* 위험도 평가 기준

정량적 기준	<p>산림감소 및 산림황폐화 비율*, 대상 제품의 농지 확대 비율, 대상 제품의 생산 동향**</p> <p>* 산림감소 및 황폐화 비율은 주로 FAO의 글로벌 산림자원평가(FRA)에서 얻은 최신 과학적 증거와 국제적 인정된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 현재 FAO의 2020년 FRA 결과 기반 평가</p> <p>** 농지 확대 비율, 생산 동향은 FAOSTAT DB 기준 평가</p>
정성적 기준	<p>정부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에 대처하는 관련 국가와 EU 또는 그 가맹국간의 협정 기타 문서,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국내법 존재 및 집행, 해당 국가의 투명성 있는 데이터 입수 가능성, 원주민 권리 보호하는 법률의 존재, 준수 및 효과적 집행 여부, 유엔 안보리 또는 EU 이사회가 관련 제품 및 이 제품의 수출입에 부과한 국제적 제재 조치 등 고려</p>

02 EUDR의 최근 주요 동향

2.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2) 위험등급 분류 결과 : 2025. 5. 22. 발표(*이러한 분류는 향후 주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변동 가능)

구분	국가명
저위험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안티가 바부다,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룬디,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중국,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스와티니,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이슬람 공화국),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 제도,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연방 국가),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왕국),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섬,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고위험 국가	벨라루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얀마, 러시아 연방
표준위험 국가	저위험,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가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1. EUDR 준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1) EUDR 적용 여부 판단 및 실사 준비 단계

① EUDR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의 지위(역할) 확인

- 대상 제품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출시하거나 유럽으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운영자(operator)인지/ 대상 제품을 바꾸지 않고(재가공하지 않고) 유럽시장 내에서 판매, 유통시키는 거래자인지 확인

② 기업의 규모 확인

- 대기업인지, 중소기업(SME)인지 확인(평균근로자 수, 순 매출액, 대차대조표 총액 기준으로 구분) ➔ 운영자/거래자 여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달라짐

③ EUDR 적용을 받는 품목을 취급하는지 확인

-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에 포함된 원자재가 7개 품목에 해당하는지 및 그것을 원재료로 만들어진 파생제품 목록(EUDR 부속서에 명시)에 해당하는지 확인
- EUDR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EUDR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확인과 함께 취급 제품의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추적을 위한 매핑 필요
- 원자재 공급자 및 생산 국가 확인 : 생산국가의 평가 결과 확인
- 공급망의 복잡성과 단계 확인 등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1. EUDR 준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2) 실사 수행 단계

- 실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짐 : ①정보수집, ②위험 평가, ③위험완화 조치
단, 저위험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경우에는 실사 의무 간소화되어 정보 수집 및 보관 의무만 수행

① 정보수집

- EUDR에서 요구하는 정보 : EU 시장에 출시 또는 유통하려는 제품의 전 생산단계의 지리적 위치 정보, 생산일자, 생산 제품의 상세 내용(중량, 선적 등), 공급망 연락처(모든 공급자 및 고객의 이름, 주소, 이메일), 산림전용 무관을 입증하는 정보(위성 이미지, 토지사용 지도 등), 합법적 벌채(생산)을 입증하는 정보(토지 소유권, 벌채 허가, 노동법 준수, 원주민의 존재 등) 등
- 공급망 기업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요청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절차 마련하여 EUDR 준수 요건과 함께 추적 도구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는 적어도 5년간 보관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1. EUDR 준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2) 실사 수행 단계



② 위험 평가

-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제품의 생산 지역에서 산림전용이 발생했을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지 평가
- 평가 내용 : 생산국가의 위험(산림 전용 및 황폐화 정도, 환경 보호법집행, 부패수준, 토지 사용 및 제3자 이슈 등), 공급망의 위험(중간단계의 수, 절차 복잡성, 믹싱 위험, 비준수 파트너 등), 토지/공급자 위험(법적 허가 및 소유권, 원주민의 권리, 멸종위기 종, 노동 및 인권 위반, 산림전용 이력, 벌채 후 관리 등), 문서작성 및 수행 위험(문서 분실, 공급자 행동, 투명성 이슈, 과거의 EUDR 위반 전력 등) 등

③ 위험 완화 조치

- 위험 평가 결과, 그 제품의 생산 지역의 산림전용 무관에 관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정보 추가 제출 요구, 제3자에 의한 검증, 현지 조사, 공급자의 개선 노력, 공급자 교체 등) 이행
- 이행 이후에는 위험을 재평가하여 산림전용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EU 시장에 출시 또는 유통 가능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1. EUDR 준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3) 실사 보고서 제출 단계

- 실사를 모두 수행한 이후에는 실사에 관한 보고서(DD Statement)을 EU의 정보시스템(EU Traces)을 통해서 제출
- 실사보고서는 기업이 EUDR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은 산림전용과 무관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
- 실사 보고서는 EU 시장 통관 절차 전에 제출 완료할 것
- 정보시스템의 템플릿에 포함되는 내용은 EUDR 부속서 II에 규정
- 제품의 선적시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EUDR 규제 간소화 조치로 인해 1년의 기간 내에 같은 제품을 같은 선적을 통해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1개의 실사 보고서로 같음
- 하위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과 비중소기업 거래자들은 상위 공급망에서 이미 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실사 보고서 번호를 참조 인용 가능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1. EUDR 준수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4) 사후 관리 단계

- 실사 보고서 제출하여도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공급망이 산림전용과 무관하고 합법 생산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할 의무
- 시장 출시 전에 대상 제품을 새로 들여올 때마다 생산지에 대한 정보 확인, 생산 국가의 위험이나 벌채 등의 상황의 변화 모니터링, 실사에 사용된 데이터의 현행화, 공급망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영, 적어도 5년간은 실사 의무 수행에 활용된 데이터 기록 및 보관
- 필요한 경우 EU 당국에 의한 검사 대비
- 중소기업이 아닌 운영자의 경우에는 실사 의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실사 상황 요약본 발행(첫 발행은 2026년 말부터)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2. EU시장에 수출하는 역외 기업 준비사항

- EUDR 적용(2025. 12. 30)을 앞두고, EU 시장에 대상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직접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나 거래자의 실사 의무 이행에 협력할 의무
- 운영자와 거래자는 EUDR 대응을 위해 실사를 위한 체계 구축하고 공급망이나 원자재 조달 방식에 변경시 즉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 기업에게 상시 요구 가능
- 2025. 5. 발표된 국가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저위험국'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생산(벌채) 목재 제품 수출시에 수입업자(운영자)는 실사 의무 간소화로 인해 관련 정보 수집 의무만 수행 : 제품의 정보, 원료 정보(수종, 공급자명 및 연락처), 벌채 정보(지리좌표, 벌채 날짜, 토지소유권 정보, 관련 법 준수 여부 관련 정보), 공급망 및 생산 이력(단계별 기업명, 소재지, 단계별 위치 및 책임자 정보 등)에 대한 제공 준비 → 계약서류에 포함될 가능성, 관련 정보 문서화 및 최소 5년간 기록 보관
-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EU에 수출시에는 해당 국가의 위험 평가 결과 확인 후 저위험 국가가 아닐 경우 EU 운영자 등이 수행하게 될 위험평가 및 위험 완화조치 등에 협력 의무 : 공급망 및 생산지의 산림전용 위험 등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위험 완화 조치에 있어서 추가 정보 요구나 제3자에 의한 검증, 현지조사에 대비 등 공급망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는 공급망 현황 상세 파악 및 필요시 이들이 EUDR 요구사항 대응하기 위한 지원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준비사항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① 적용 제품 확인	EU DR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부속서 I), HS 코드 확인
② 공급망 및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공급망 현황 파악 및 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산지 정보 등 추적을 통한 정보 수집 ✓ 공급망 기업 정보 ✓ 산지 정보(생산 국가, 생산지 역의 지리적 좌표, 생산 일자(벌채일 또는 기간) 등) ✓ 산림 전용 여부 및 합법 생산 여부를 확인, 관련 정보 수집 :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산림 전용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벌채 구역 지도 위성사진 등, 벌채 허가증, 수출입 허가서, 인증서 등 벌채, 제조, 수출 전 과정의 공급망 매핑 필요
③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필요시)	산지 전용 위험도 평가, 고위험 지역일 경우에는 위험 완화 조치 등 설명 자료 확보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결과 문서화
④ 실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협력	공급망 관련 정보 작성 등 수출업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업자 이름, 주소, 제품의 시장 진입 또는 철수시 사업자 등록번호(EORI) ✓ 제품의 HS 코드, 상호를 포함한 제품 설명, 학명(목재품목), 시장 출시 제품의 순중량(kg)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 수량 ✓ 제품 생산 국가와 관련된 모든 토지의 지리적 위치 정보 ✓ 기존에 제출된 실사보고서 참조시 참조번호 ✓ 실사 선서 내용 ✓ 날짜와 서명
⑤ 내부 문서화 및 자료 보관	수집한 모든 자료(계약서, 인증서, 산지 정보, 운송기록 등)는 문서화하고, 최소 5년간 보관
⑥ 업무 담당자 교육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정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EU DR 관련 교육,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정비, 필요시 대응 매뉴얼 작성 등 → 인증기관이나 산림청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 EUDR 적용 사례(예시)

제3국(C)에서 종이를 수입한 국내 업체 A가 신문을 인쇄, 제작하여 대기업인 B에게 판매하고 있다. A는 중소기업으로서 종이를 제3국(C)에서 수입하였는데, C는 펄프 원료를 자국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수입한 종이를 자국에서 신문을 인쇄, 제작하여 EU 시장에 출시하고, B와 신문 공급 계약을 맺어 B가 EU 시장에 그 신문을 유통시키고 있다.

- **중소기업인 A는 종이(HS 4801)를 수입하여 시장에 출시한 업스트림 운영자로서 실사 수행 의무** → 시장 출시 이전에 실사를 수행하고 실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종이’에 대한 실사를 위해 이를 수입한 제3국(C)에게 관련 정보 요청(C는 종이 생산을 위해 자국 또는 타국으로부터 펄프 원료 수입한 경우 공급망 전부에 대한 지리정보 등 입수, 만일 같은 지리적 위치로부터 다회 선적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도 1년 기한 내에서는 1개의 실사 보고서 제출 가능)
- A는 또한 그 종이를 사용해서 신문을 인쇄, 제작하여 출시하였기 때문에 **신문(HS 4902)에 대한 다운스트림 운영자로서 실사 수행 의무** ⇨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서 종이에 대한 실사를 이미 수행하였고 그 종이를 그대로 사용해서 신문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에 대해 시행된 실사와 제출된 실사보고서를 참조**하면 되고, 별도의 실사를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단, 종이에 대한 실사보고서 참조 번호에 대한 기록 보관 의무
- A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종이를 국내 시장에 출시,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에 실사 보고서 참조번호 기재** 필요, 이를 위해서는 실사보고서가 정보 시스템에 제출되고, 참조 번호가 발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관 신고서 작성 전에 종이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

03 국내 목재 업계의 준비사항

♣ EUDR 적용 사례(예시)

제3국(C)에서 종이를 수입한 국내 업체 A가 신문을 인쇄, 제작하여 대기업인 B에게 판매하고 있다. A는 중소기업으로서 종이를 제3국(C)에서 수입하였는데, C는 펄프 원료를 자국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여 종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수입한 종이를 자국에서 신문을 인쇄, 제작하여 EU 시장에 출시하고, B와 신문 공급 계약을 맺어 B가 EU 시장에 그 신문을 유통시키고 있다.

- 대기업인 B는 A로부터 신문을 구입하여 시장에 판매한 거래자로서 EUDR에 따라 대기업인 거래자는 대기업 운영자와 동일한 의무 부담하므로, 신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이때 종이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사보고서 참조 번호를 기재하면 되는데, 이 때 종이에 대한 실사가 EUDR 제4조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미 제출된 실사 보고서 참조할 수 있음(EUDR 제4조제9항)
- B는 거래자로서 신문에 대한 EUDR 준수에 관한 책임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신문을 출시한다면 1년 기한 내에 여러번 출시한 것에 대해서 1개의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단,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관련 제품에 대해 실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의무)

04

맺음말

04 맺음말

- EUDR에 따른 실사 수행 및 실사보고서 작성은 EU 역내의 운영자와 거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들 기업에 수출하는 자국의 목재 및 목재제품 기업들은 실사 수행 및 실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고 이에 협력해야 할 것임
- EUDR의 적용이 대기업의 경우 올해 말부터 시작되나, EUDR 적용을 받는 해당 제품의 수입시 세관 신고서에 실사보고서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세관 신고 전에 실사 수행 및 실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저위험국가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국내 생산 목재나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EU 기업들은 실사의무 간소화 적용을 받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 중에 제3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평가나 위험완화조치 이행에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앞으로 EUDR의 적용을 받는 역내 기업들은 자체적인 실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 등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